

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(폐기) 공고

관내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(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) 제3항 규정에 의거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자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6년 06월 01일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

- 다 음 -

- ☐ 공고 목적 :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(폐기) 공시송달 공고
- ☐ 강제처리대상 건설기계 현황

연번	건설기계 등록번호	기종	소유자	소유자 주 소	무단방치 주 소	견인 및 보관 예정장소	비 고
1	미상	덤프 트럭	미상	미상	인천 서구 오류동 434-42번지 앞	인천 서구 원창로69(원창동) [동일차량산업(주)]	

- ☐ 공고 기간 : 2016. 06.01 ~ 2016. 06.10(10일간)
- ☐ 공고 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
- ☐ 공고 내용

-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(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)
제3항을 위반한 대상 건설기계 소유자에게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전까



지 건설기계를 자진처리(자진회수 또는 자진폐기)조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『건설기계관리법』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(폐기)하고, 같은 법 제4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☐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(☎032-560-4872)

